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2월 1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5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2. 14.(월)	담당부서	전력계통혁신과
담당과장	정재환 과장(044-203-3930)	담 당 자	진세운 사무관(044-203-3931)

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%까지 가능해진다

- 「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」 국무회의 의결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**는 2월 15일(화) 국무회의**를 통해 **"송·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**(이하 : 송주법) **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"이 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○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('21.8.9. 보도자료 기배포)에 따른 후속조치로서, 해당 지역에서 **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**하는 경우 **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,**

* 송주법上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,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,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

* 개정前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(마을공동지원사업 + 주민지원사업)의 50%를 넘을 수 없었음

○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**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**하며,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**「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」에 명시**할 예정이다.

□ 산업부는 “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**「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」을 수립**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**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**하도록 하겠다”고 하면서,

○ “그간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**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**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**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,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“**라고 밝혔다.

○ 또한, “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**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**하고 **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**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진세운 사무관(☎ 044-203-39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